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21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곽상언・박지원・이기헌

강경숙 · 서미화 · 한창민

김재원 · 김종민 · 최기상
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,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 하고 있음.

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,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제헌절(헌법의 날)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8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광복절"을 "헌법의 날, 광복절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 | 제2조(공휴일) |
| 호와 같다. | , |
| 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 | 1 |
| 따른 국경일 중 3·1절, <u>광복</u> | <u>헌법의</u> |
| <u>절</u> , 개천절 및 한글날 | <u>날, 광복절</u> |
| | _ |
| 2. ~ 10. (생 략) | 2. ~ 10. (현행과 같음) |